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06호서식]

제 호

수 신 : 귀하

제 목 : 송 ·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· 수색 · 검증 집행사실 통지

당서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·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·수색·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.

압수 · 수색 · 검증영장번호	
압수 · 수색 · 검증집행기관	
전기통신가입자	
압수 · 수색 · 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	
압수 · 수색 · 검증 집행대상의 범위	

사법경찰관